<별지 서식>

- ※ 정보공개서는 **영업표지(브랜드) 별로 작성·등록**하여야 합니다.
- ※ 목차는 가맹본부에 맞게 더 자세하게 나누십시오.
- ※ 이하의 내용은 공정거래위원회가 가상의 가맹본부를 상정하여 작성한 것입니다. 본 표준정보공개서를 사용하려는 가맹본부는 자신의 상황에 맞게 내용을 작성하시고, 특히 대괄호[] 안의 내용은 가맹본부의 영업방침에 따라 수정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해당되는 사항이 없는 경우에도 반드시 "해당없음", "그러한 사실이 없습니다." 등으로 일반인이 알기 쉽게 표시하십시오. 아무 표시가 없는 경우 정보공개서 기재사항을 누락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 본문 내용 중 보충설명이 필요한 부분에는 **점선으로 된 글상자** 안에 그 내용을 기재하였으니 참고하십시오.
- ※ 객관적인 사실에 근거하지 않거나 계약서의 관련 내용과 다른 사항이 정보공개서에 기재될 경우 관련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 표준정보공개서는 가맹사업법령에 따른 정보공개서 기재사항을 모두 포함하고 있으나 본 양식을 사용한 것만으로 정보공개서 등록이 항상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므로 **법적 검토를 하신 후 사용**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정보공개서 등록번호] 20160696 [정보공개서 최초 등록일] 20160726 [정보공개서 최종 등록일] 2025.02.06.

[가맹희망자가 운영하게 될 영업표지(베스트키즈)]

정보공개서

[베스트키즈]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1항에 따라 귀하에게 이 정보공개서를 드립니다.

2024. 4. 18.

(주)서울랜드

〈주 의 사 항〉

이 정보공개서는 귀하께서 체결하려는 가맹계약 및 해당 가맹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정보를 담고 있으므로 그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한 후에 계약체결 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맹희망자에게는 정보공개서의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고 판단할 수 있도록 일정한 기간이 주어집니다. 따라서 이 정보공개서를 제공받은 날부터 14일(변호사나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은 경우에는 7일)이 지날 때까지는 가맹본부가 귀하로부터 가맹금을 받거나 귀하와 가맹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이 정보공개서는 법령이 정한 기재사항을 담고 있는 것에 불과하며 그 내용의 사실 여부를 공정 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에서 모두 확인한 것은 아닙니다. 또한, 귀하께서는 어디까지나 가맹계약 서의 내용에 따라 가맹사업을 운영하게 되므로 정보공개서의 내용에만 의존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귀하께서 가맹계약서에 서명하는 순간부터 그 내용에 구속됩니다. 따라서 충분한 시간을 갖고 정 보공개서나 가맹계약서의 내용을 검토하시고 기존 가맹점사업자를 방문하여 얻은 정보에 근거하 여 가맹본부의 신뢰성을 판단하도록 하십시오.

가맹사업은 법률, 회계, 경영 등 다양한 분야의 지식이 필요한 분야이므로 가맹거래사 등 전문가의 자문을 받는 것을 권장합니다. 귀하가 과거 사업경력이 없는 경우 관련 업종에서 경험을 쌓아경영 수행 능력을 갖출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업 초기에 많은 자금이 소요되므로 귀하의 재정상태를 확실히 점검한 다음 창업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가맹본부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경기도 과천시 광명로 181

[가맹본부의 대표전화번호] 02-509-6225

[가맹본부의 대표팩스번호] 02-509-6192

[가맹사업 담당부서 및 전화번호] 마케팅팀 키즈파트/ 02-509-6225

Ι.	가맹본부의	일반 현황
п.	가맹본부의	가맹사업 현황
ш.	가맹본부와	그 임원의 법 위반 사실
IV.	가맹점사업:	자의 부담
V.	영업활동에	대한 조건 및 제한
VI.	가맹사업의	영업 개시에 관한 상세한 절차와 소요기간
VII.	가맹본부의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
VIII.	교육・훈련역	에 대한 설명
	·	지영전 혀화 (시석) ····································

< 정보공개서를 읽기 전에 >

- ◇ 정보공개서는 가맹본부의 자료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이므로 귀하가 실제 운영할 사업 내용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전에 충분히 내용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경우에 가맹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 정보공개서의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법률 지식이 필요합니다.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은 가맹본부 측에 충분한 설명을 요구하고 필요한 경우 가맹거래사나 변호사 등 전문가에게 자문을 요청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 가맹본부로부터 제공받은 정보공개서와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에 등록한 정보공개서(http://franchise.ftc.go.kr)를 비교하여 다른 내용이 있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에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 ◇ 정보공개서 기재사항에 허위·과장된 정보가 포함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공정거** 래위원회 또는 가맹사업거래홈페이지(http://franchise.ftc.go.kr)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보공개서와 함께 귀하가 창업하려고 하는 점포 예정지 인근 10곳의 정보(가맹점명, 소재지, 전화번호)를 제공받아야 합니다. 인근 점포를 직접 방문하셔서 가맹본부를 신뢰할 수 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가맹본부와 상담하기 전 '창업희망자가 알아야 할 10가지 필수사항'과 '창업희망자를 위한 가맹사업 계약체결 안내서'를 확인하시고 가맹사업법 관련 조항도 찾아보십시오.
 - 가맹사업거래홈페이지(http://franchise.ftc.go.kr) '알림마당' '공지사항'
- ◇ 가맹본부와 분쟁이 발생한 경우 정보공개서는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습니다. 정보공개서를 계약서와 함께 잘 보관하십시오.
- ◇ 참고로,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 변경등록을 신청하여 공정위 등에서 심사 중인 경우에는 실제 내용과 본 정보공개서가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 정보공개서 를 제공받으시면 가맹본부에게 변경등록 신청여부 및 변경되는 내용에 대해 반드 시 확인받으시고, 필요한 경우 추후 변경등록이 완료된 정보공개서의 제공을 요 청하시기 바랍니다.

I. 가맹본부의 일반 현황

1. 가맹본부의 일반 정보

당사의 일반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상호	영업표	[지]	주 소				
	베스트키즈		경기도 과천시 광명로 181				
	법인 설립등기일 ^①		사업자등록일	대표자	대표전화번호 대표팩스번		대표팩스번호
(주)서울랜드	1986.01.23		1986.01.31	김대중, 신상철	02-509-6225 02-5		02-509-6192
	법인등록번호	13411	1-0022777	사업자등록	루번호	138-	-81-04654

2. 특수관계인*의 일반 정보

당사의 특수관계인 중 최근 3년 동안 가맹사업 경영 경험이 있는 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관계	이름/상호	영업표지		주 소	
-11 = 111	7] -1] 7		경기	도 과천시 광명로	181
대표이사	김대중	베스트키즈	대표자	대표전화번호	대표팩스번호
(공동대표)	㈜서울랜드		김대중, 신상철	02-509-6225	02-509-6192
관계	이름/상호	영업표지		주 소	
미교시기	 		경기	도 과천시 광명로	<u>181</u>
대표이사 (공동대표)	신상철 ㈜서울랜드	베스트키즈	대표자	대표전화번호	대표팩스번호
(554五)	[[[[]]]] [] []		김대중, 신상철	02-509-6225	02-509-6192
관계	이름/상호	영업표지		주소	
2] () ()	a) 원)		경기	도 과천시 광명료	181
사용인 (임원)	최형기 ㈜서울랜드	베스트키즈	대표자	대표전화번호	대표팩스번호
(급전)	[[다]시골덴프		김대중, 신상철	02-509-6225	02-509-6192
관계	이름/상호	영업표지		주소	
			경기	도 과천시 광명료	181
사용인	허제이정	베스트키즈	대표자	대표전화번호	대표팩스번호
(임원)	(주)서울랜드		김대중, 신상철	02-509-6225	02-509-6192
관계	이름/상호	영업표지		주소	
			경기	도 과천시 광명로	181
사용인	구자철	베스트키즈	대표자	대표전화번호	대표팩스번호
(임원)	(주)서울랜드		김대중, 신상철	02-509-6225	02-509-6192
관계	이름/상호	영업표지		주소	
			경기	도 과천시 광명료	181
사용인	정경태	베스트키즈	대표자	대표전화번호	대표팩스번호
(임원)	(주)서울랜드		김대중, 신상철	02-509-6225	02-509-6192

3. 가맹본부의 인수・합병 내역

당사는 바로 전 3년 동안 다음과 같이 다른 기업(가맹사업 영업표지를 포함하여 가맹사업을 경영한 기업)을 인수·합병(다른 기업의 가맹 관련 사업을 양수 또는 양도한 경우도 포함한다)하거나 다른 기업에 인수·합병된 적이 없습니다.

인수 합병 여부	기업명	영업표지	인수·합병일	주 소	대표자
가맹본부가 다른 기업을 인수함	해당없음				
가맹본부가 다른 기업의 가맹사업 일부를 인수함	해당없음				
다른 기업에 가맹사업 일부를 인도함	해당없음				
다른 기업이 가맹본부를 합병함	해당없음				

4. 가맹희망자가 앞으로 경영할 가맹사업(앞으로 [베스트키즈]이라 합니다)의 내용

귀하는 앞으로 아래 표에 따른 가맹사업을 경영하게 됩니다.

구 분	내 용	추가 설명
명 칭 ^①	베스트키즈	
상 호 ^②	베스트키즈 00점	
상표(서비스표) ^③		서비스표 등록번호: 4102886790000
광 고 ^④		
그 밖의 영업표지		서비스표 등록번호 : 4102808750000 4102760380000

5. 바로 전 3개 사업연도 $^{\mathbb{Q}}$ 의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

1) 당사의 바로 전 3년 동안의 재무상황 요약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미포함)

연도	자산총계 ^②	부채총계	자본총계	매출액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2021년	103,073,054	32,007,507	71,065,547	31,393,472	-1,867,564	-5,709,365
2022년	112,338,609	48,935,159	63,403,450	49,904,580	1,510,209	-6,901,932
2023년	101,248,134	47,037,002	54,211,132	56,740,362	392,811	-5,467,349

그 근거자료는 별첨 1과 같습니다.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사본]

[당사는 법인사업자로서 해당사항 없음]

2) 당사의 바로 전 3년 동안의 가맹사업 관련 매출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항목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은 가맹본부에 정보공 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6. 가맹본부의 임원^① 명단 및 사업경력^②

당사의 임원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교러서비	시르	처 기이	사업	경력		
관련여부	이름	현 직위	기 간	직 위	담당 업무	
	김대중	대표이사 (공동대표)	대 표 : 2018.07~2021.03 각자대표 : 2021.03~2023.05 공동대표 : 2023.05~현재	㈜서울랜드 대표	총괄	
	신상철	대표이사 (공동대표)	공동대표 : 2024.09~현재	㈜서울랜드 대표	총괄	
가맹사업	최형기	부회장	공동대표 : 2024.02~2024.08 임원 : 2024.09~현재	㈜서울랜드 부회장	총괄	
관련 임원	허제이정	전무	2022.03~현재	㈜서울랜드 전무	전략기획실	
	구자철	상무	2022.03~현재	㈜서울랜드 상무	경영지원, 경영서비스 부문 총괄	
	정경태	감사	2022.03~현재	㈜서울랜드 감사	업무감사	

7. 바로 전 사업연도 말 임직원 수

당사의 바로 전 사업연도 말 임직원 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시점	임원=	수(명)	직원수(명) ^①	
八台 L	상근	비상근	주천구(경)	
2023년 12월 31일	4		336	

[※ 사업연도가 연도 말이 아닌 가맹본부는 사업연도 말을 기준으로 기재합니다.]

8. 가맹본부 및 가맹본부의 특수관계인의 가맹사업 경영 사실

당사 및 당사의 특수관계인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다음과 같이 가맹사업을 경영하였거나 경영하고 있습니다.

관계	상호/이름	구분	기간 [©]	사업내용 ^②
가맹본부	(주)서울랜드	가맹사업 경영	2016.12.~ 현재	베스트키즈(등록번호: 4102760380000)이라는 영업표지의 유아관련 업종 경영

9. 사용을 허용하는 지식재산권^①

당사가 귀하에게 사용을 허용하는 지식재산권은 다음과 같습니다.

명칭	권리내용	등록 및 등록신청 여부(일자)	출원번호 및 등록번호	소유자 (등록신청 자)	존속기간 만료일 (가맹본부의 사용기간 [®])
베스트키즈	간판	등록 2014.05.19	출원번호 4120130020113 등록번호 4102886790000		2024.05.19
	인테리어 시설물 및 판촉 홍보활동	등록 2014.02.20	출원번호 4120120034578 등록번호 4102808750000	㈜서울랜드	2034.02.20
베스트키즈 BEST KIDS KIDS PARK		등록 2013.08.06	출원번호 4120120034579 등록번호 4102760380000		2033.12.23

귀하가 허용된 범위를 벗어나 당사의 상표(특허)를 사용할 경우에는 민형사상 책임을 질수 있으니 주의하여야 합니다.

당사의 지식재산권 내용은 한국특허정보원 특허정보검색서비스(http://www.kipris.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Ⅱ. 가맹본부의 [베스트키즈] 가맹사업 현황

1. [베스트키즈] 을 시작한 날: 2016년 12월 10일

[직영점을 시작한 날] : 2012년 11월 08월

2. [베스트키즈] 연혁

가맹본부 상호	영업표지	대표자의 이름	가맹사업 경영 기간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김대중 박세화 (각자대표)	2016.12 ~ 2023.05	
(Z))] 6 nl e	ᆒᇩᆔᄀ	김대중 박세화 (공동대표)	2023.05 ~ 2024.01	거리는 크리가 하더그 101
(주)서울랜드	베스트키즈	최형기 김대중 (공동대표)	2024.02 ~ 2024.08	경기도 과천시 광명로 181
		김대중 신상철 (공동대표)	2024.09 ~ 현재	

3. [베스트키즈] 업종

영업표지	업종			
베스트키즈	대분류	소분류(주요상품)		
베스트기스	유아관련(교육 외)	어린이 놀이시설		

4. 바로 전 3년간 사업연도 말 영업 중인 [베스트키즈] 가맹점 및 직영점의 총 수

(단위: 개)

	2	2021.12.3	31	2	2022.12.3	31	2	2023.12.3	31
지역	전체	가맹점 수	직영점 수	전체	가맹점 수	직영점 수	전체	가맹점 수	직영점 수
전체	1	1	0	1	1	0	1	1	0
서울	0	_	0	0	_	0	0	_	0
부산	_	_	_	_	_	_	_	_	_
대구	_	_	_	_	_	_	_	_	_
인천	_	_	_	_	_	_	_	_	_
광주	_	_	_	_	_	_	ı	_	_
대전	_	_	_	_	_	_	-	_	_
울산	_	_	_	_	_	_	-	_	_
세종	_	_	_	_	_	_	ı	_	_
경기	1	1	_	1	1	_	1	1	_
강원	_	_	_	_	_	_	-	_	_
충북	_	_	_	_	_	_	ı	_	_
충남	_	_	_	_	_	_	ı	_	_
전북	_	_	_	_	_	_	ı	_	_
전남	_	_	_	_	_	_	_	_	_
경북	_	_	_	_	_	_	_	_	_
경남	_	_	_	_	_	_	_	_	_
제주	_	_	_	_	_	_	_	_	_

5. 바로 전 3년간 [베스트키즈] 가맹점 수

(단위: 개)

연도	연초	신규 개점	계약 종료 ^①	계약 해지 ^②	명의 변경 ^③	연말
2021	1	_	_	_	-	1
2022	1	_	_	_	-	1
2023	1	_	_	_	_	1

6. [베스트키즈]외에 가맹본부가 경영하거나 특수관계인이 경영하는 가맹사업 현황

당사는 [베스트키즈]외에도 가맹본부 및 가맹본부의 특수관계인이 경영하고 있는 가맹사업의 바로 전 3년간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 해당없음

7. 바로 전 사업연도 가맹점사업자 $^{(1)}$ 의 연간 평균 매출액(직영점 매출은 제외)과 그

산정기준²

[베스트키즈] 가맹점사업자 한 명이 2023년에 올린 연간 평균 매출액 및 지역별 매출액은 아래와 같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보다 정확한 금액은 매출액 표의 상한과 하한 금액 사이에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단위 : 천원, 부가세 미포함)

		202	2023년 가맹점사업자의 연간 평균 매출액					
		연간 평균	메추애	연간 되	평균	연간 3	평균	비고 ⁵
지역 ^④	2023년말	년 ⁶ 년	기리 기	매출액(매출액(
1/17	가맹점수	연간 평균	면적 [©]		면적		면적	
		매출액	3.3m ² 당	상한	3.3m^2	하한	3.3m^2	
		1,5	0.0111 0		당		당	
전체 ^⑦	1	64,738	1,728	64,738	1,728	64,738	1,728	1곳 산정
서울	-	해당없음						
부산	-	해당없음						
대구	_	해당없음						
인천	_	해당없음						
광주	_	해당없음						
대전	_	해당없음						
울산	_	해당없음						
세종	_	해당없음						
경기	1	64,738	1,728	64,738	1,728	64,738	1,728	1곳 산정
강원	_	해당없음						
충북	_	해당없음						
충남	_	해당없음						
전북	_	해당없음						
전남	_	해당없음						
경북	_	해당없음						
경남	_	해당없음						
제주	_	해당없음						

8. [베스트키즈] 가맹점의 평균 영업기간

[베스트키즈]의 바로 전 사업연도 말 현재 영업중인 가맹점사업자의 평균 영업기간 은 다음과 같습니다.

연도	영업중인 가맹점 수 ^①	평균 영업기간 ^②
2023	1	2,498

^{※ 2023}년 말 현재 운영중인 가맹점은 1개로 평균 영업기간이 아닌, 실제 영업기간을 기재합니다.

9. 가맹지역본부(지사, 지역총판)^①의 일반 정보

당사는 [베스트키즈] 가맹점 관리를 위하여 가맹 본부 외 지역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10. 광고・판촉 지출 내역

※ 가맹사업 운영을 위한 광고,판촉 지출내역은 없으며 손익계산서 부분의 광고선전비 부분은 가맹사업부분 지출이 아닌 본사(서울랜드)운영에 따른 광고선전비 임을 알립니다.

11. 가맹금 예치

귀하가 당사와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가맹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주)신한은행]에 예치하여야 하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예치기관 상호	담당 지점 또는 부서	주소	전화번호
신한은행	강남역금융센터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398 플래티넘타워	02-581-5055

자세한 예치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예치방법 : 가까운 영업점 또는 인터넷뱅킹으로 가맹금 예치 가능
- 은행영업점방문 : 본인신분증 지참하고 본사로부터 가맹금 예치신청서 수령한후
 가까우 신한은행을 방문하여 예치
- 인터넷뱅킹이용 : 신한은행 홈페이지 ⇒ 기업 ⇒ 기업별 맟춤서비스 ⇒ 가맹금예치 서비스 ⇒가맹본부 조회 및 변경

귀하는 또한 [신한은행]에서 발급한 <u>예치증서</u>를 보관하고 있어야 하며 아래 주의사항을 반드시 알아 두어야 합니다.

가맹금 예치와 관련하여 가맹점사업자가 알아두어야 할 사항

- 1. 가맹점사업자가 영업을 시작하거나 가맹계약 체결일부터 2개월이 지난 경우에는 이 가맹예치금은 가맹본부에 지급됩니다.
- 2.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가맹금의 지급이 보류됩니다.
- 가. 가맹점사업자가 예치가맹금을 반환받기 위하여 소를 제기한 경우
- 나. 가맹점사업자가 예치가맹금을 반환받기 위하여 알선. 조정. 중재 등을 신청한 경우
- 다.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금반환 사유가 발생하여 가맹본부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한 경우
- 3. 2번의 가~다의 조치를 취한 경우 그 사실을 예치기관에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예치가맹금은 가맹본부에 지급될 수 있습니다.

12.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 등의 체결 내역

※ 해당없음

Ⅲ. 가맹본부와 그 임원의 법 위반 사실

1.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 지사의 시정조치 등^①

당사와 당사의 임원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가맹사업거래와 관련하여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및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지사로 부터 시정조치 등을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2. 민사소송 및 민사상 화해

당사와 당사의 임원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가맹사업거래와 관련하여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거나, 사기·횡령·배임 등 타인의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영득 또는 이득하는 죄와관련된 민사소송에서 패소의 확정판결을 받았거나, 민사상 화해를 한 사실이 없습니다.

3. 형(刑)의 선고

당사와 당사의 임원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사기·횡령·배임 등 타인의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영득 또는 이득하는 죄를 범하여 형의 선고를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Ⅳ.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1. 영업개시 이전의 부담

귀하가 [베스트키즈] 가맹사업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금액이 소요됩니다. 이 금액에는 귀하가 지불하여야 하는 [점포의 임대비용 등]*이 제외되어 있습니다. 또한, 귀하가 운영하게 될 점포의 위치 및 규모, 내부 설비의 종류, 영업 시작까지 걸리는 시간 등이 상이하므로 실제 지불하는 금액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귀하가 부담하여야 할 대가는 매우 다양하나 크게 다음의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구분	지급 대상	예치 대상 여부	비고
최초 가맹금	가맹본부	예치	확정 금액
보증금	가맹본부	예치	확정 금액
기타 비용	가맹본부 또는 다른 업체	예치하지 않음	추정 금액

1) 최초 가맹금을 자세히 나누면 다음 표의 내용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구분 ^①	금액 ^②	지급 기한	반환조건 ^③	반환될 수 없는 사유	비고
총계	22,000				
가입비	11,000	계약 체결 후 3일 이내	영업 개시 이전까지 계약 해지	가맹점 모집을 위해 소요된 실제비용	반환시 당사에서 정한 기준의 위약벌을 공제 * 계약서 13조 참조
교육비	11,000	교육 시작 7일 이전	교육 시작 1일 이전에 계약 해지		교육이 시작되면 반환되지 않음

- 귀하가 계약체결 또는 당사에 금전지급 후 해약을 하고자 하는 경우 위약벌에 대한 내용은 계약서 13조 참조 2) 보증금을 자세히 나누면 다음 표의 내용과 같습니다. 보증금은 계약 종료시 전액이 귀하에게 반환되는 대가입니다. 다만, 귀하의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없음)

구분 ^①	금액 ^②	지급 기한	가맹점사업자의 귀책사유 ^③	비고
총계	10,000			
보증금	10,000	계약체결 후 3일 이내	계약위반 및 본사공급 물품대금 미지급	

3) 예치가맹금의 범위와 그 금액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귀하가 예치하여야 하는 가맹금의 자세한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금액(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합계	32,000
가입비	11,000
교육비	11,000
계약이행보증금	10,000 (부가세 없음)

4) 귀하가 그 밖에 지급하여야 하는 비용을 자세히 나누면 다음 표의 내용과 같습니다. 귀하가 가맹점을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물품의 품목은 [별첨3,4]쪽에서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항목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은 가맹본부에 정보공 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면적3.3㎡	지급		
구분	지급대상	금액	당 금액	기한	반환조건	비고
~ _n		558,026				
총계		140평				
인테리어 (점포 내부공사,등)	가맹본부 (서울랜드)	308,000	2,200	제작착수 3일 전	공사 전 계약취소	점포구조/상태에 따라 상이 220만원/평당
간판	또는 가맹본부가 지정한 업체 (미지정)	11,000		주문 3일 전	제작착수 전 계약취소	메인사인1개, 보조사인1개, 벽면실사 105㎡, 이용안내 사인 4개, 놀이기구사인10개, 메뉴사인 1개
내부설비 (놀이시설, CCTV 등)	가맹본부 (서울랜드)	195,800		설치 3일 이전	주문 전 계약 취소	별첨3 참조
의탁자	가맹본부 (서울랜드) 또는	5,500		업체협의	상품 미공급시	수량 협의
기기 및 식기(냉장고, 컵, 접시 등)	가맹본부가 지정한 업체 (미지정)	27,500		합세엽의	정품 미중됩시	구당 엽의
POS	가맹본부 (서울랜드)에게 시스템 제공업체 (협력업체)	3,850			설치 전 계약취소	매장운영 방식 및 계약관계에 따른 변경가능
인쇄물, 홍보물	가맹본부	3,300			제작전 계약취소	
초도물품	(서울랜드)	3,076			상품 미공급시	1회전시 필요한 원부자재

- * 별도공사 : 외부공사, 철거공사, 소방방염, 전기증설, 냉난방, 도시가스, 화장실 등 기본공사
- * 본사 사정에 의해 사전 공지 후 공급방법과 공급업체, 항목 변경가능
- * 계약서 제10조에 따라 귀하가 직접 인테리어 등을 할 경우 가맹사업 전체의 통일성과 독창 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당사의 기준에 적합하게 하여야 하며, 이와 관련된 내용을 사전에 당사와 협의하고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이러한 경우에 귀하는 당사에 감리비 평당 55 만 원(부가세포함)의 비용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5) 가맹점 입지 선정 주체 및 선정 기준

당사는 신규 가맹점 입지를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선정 주체 ^①	선정 기준 ^②
가맹희망자	1) 입지는 당사 담당자와 귀하가 상담을 통하여 파악합니다. 2) 상담 후 가맹점 개설이 가능한 영업지역을 귀하에게 제시합니다. 3) 상호간에 협의하여 그 중에서 한 곳을 선택하지만, 귀하가 동의하지 않는 경우새로운 입지를 정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영업이 늦어지는데 따라 발생하는 비용을 추가로 부담할 수 있습니다. 4) 최종적으로 선택한 영업지역에 대한 책임은 귀하에게 있으니, 이점 유의하고신중하게 선택 하십시오.

6) 가맹점사업자와 그 종업원의 교육 및 계약ㆍ채용 기준

당사와 계약을 체결하여 교육을 받거나 귀하가 운영하는 가맹점에 종업원을 채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교육 기준 ^①	계약·채용 기준 ^②
가맹점사업자 (종업원 포함)	국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을 것	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이 아닐 것 만20세 이상일 것

7) 가맹점 운영에 필요한 설비 등의 내역 및 공급방법 · 공급업체

[베스트키즈] 가맹점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물품이 필요합니다.



이 항목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은 가맹본부에 정보공 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8) 본사는 가맹금 분납절차를 시행하고 있지 않습니다.

2. 영업 중의 부담

1) 비용 부담

귀하가 영업을 시작한 후에도 다음과 같은 비용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특히 광고분담금 에 대한 세부 분담기준은 [33]쪽에 나와 있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구분 ^①	지급대상 ^②	금액 ^③	지급기한	반환조건	반환될 수 없는 사유	月고④
로열티	가맹본부 (서울랜드)	매출액의 3%	매월 25일		후불	
판촉분담금		행사별로 분담 등	협의	판촉미실시	판촉실시	
교육훈련비	㈜공정위	추후협의	교육 실시 10일 이전			보수교육
영업표지 변경 등에 따른 간판변경 비용		실비	간판 변경 후 2일 이내			부득이한 경우 변경될 수 있으며, 교체비용은 당사자의 귀책사유 등을 고려하여 협의결정
시설, 각종 기기의 교채보수비용	가맹본부 (서울랜드) 또한 가맹본부가 승인한 업체	범위에 따라 상이	교체·보수 후 5일 이내			교채보수 필요시 시설, 기기 등의 내구연수 등을 감안하여 당사와 협의하여 결정
점포환경 개선 비용	(미지정)	가맹본부 분담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본사협의			36P 참조
POS 사용료		업체 기준	업체 협의			
지연이자	가맹본부 (서울랜드)	연20%	지급기일의 다음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			계약상 금전채무지급 기한을 경과했을 시 부담

2) 구입요구 품목 구입을 통한 가맹금 지급

가맹점사업자가 필수품목(강제, 권장)의 거래를 통해 당사에 지급하는 대가 중 적정한 도매가격을 넘는 대가(이하 "차액가맹금"이라 한다)의 (2023)년도 평균 규모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 항목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은 가맹본부에 정보공 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3)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감독

당사는 귀하의 영업 상황에 대하여 일정한 감독을 실시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감독 항목	내 용	시기	비고
재고관리	실재제고 수량을 조사하여 장부상 재고와 비교	분기별 1회	
회계처리	가맹점사업자의 매출누락에 대한 회계 조사 실시	1년 1회	문의: 가맹본부
고객서비스	고객 서비스 관련 점검	분기 1회	

3. 계약 종료 후의 부담(부담이 없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기재합니다)

1) 계약연장이나 재계약 과정의 추가 부담

귀하가 당사와 계약이 종료된 후에 연장(갱신, 재계약을 포함한다)하기 위한 추가부담은 없습니다.

- 2) 가맹본부의 사정에 의해 계약종료 시 조치사항
 - 가) 가맹본부가 가맹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기존 가맹점사업자와의 계약승계 여부

당사가 가맹사업을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가맹점사업자는 가맹계약을 종료하고 계약관계를 탈퇴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가맹점사업자가 양수한 사업자(가맹본부)와의계약 관계 유지를 원할 경우에는 가맹계약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가맹관계를 탈퇴할 경우, 당사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지에 해당되므로 가맹점사업자는 남은 가맹계약기간을 고려하여 일부 가맹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나) 가맹본부가 사용을 허락한 지식재산권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조치사항

당사가 가맹점운영을 위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사용을 허가한 상표권, 특허권 등 지식재산권이 존속기간의 만료, 소유권(사용권) 변경, 효력 상실 등의 사유로 더 이상지식재산권을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당사의 책임과 비용으로 이를 대체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며, 이로 인해 가맹점사업자에게 손해가 발생하면 가맹점사업자와 협의하여 이를 배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대체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지 못하거나 대체수단이 만족스럽지 못할 경우에는 가맹점사업자는 체결한 가맹계약을 해지하실 수 있으며, 이 경우 귀책사유 등을 감안하여 일부 가맹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 가맹본부가 해당 가맹사업을 중단하는 경우 조치사항

당사는 원칙적으로 모든 가맹계약이 종료될 때까지 가맹사업을 중단하지 않습니다. 다

만, 예상치 못한 사정으로 당사가 가맹사업을 중단하게 될 경우에는 이를 미리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지하고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할 것입니다. 이 경우 계약해지의 귀책사유를 고려하여 일부 가맹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가맹점 운영권 양도 과정의 부담

귀하가 운영하는 [베스트키즈] 운영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경우에는 추가로 부담하는 부분은 없습니다. 다만, 양수인은 가맹점을 운영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교육을 받아야 하며 이에 필요한 교육비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보증금도 가맹본부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운영권 양도에 관한 자세한 절차는 [30]쪽에 나와 있습니다.]

4) 계약 종료 후의 조치 사항

[귀하는 계약이 종료(기간만료, 계약해지)된 경우에는 당사와 관련된 영업표지, 설비, 광고 등 [베스트키즈] 브랜드임을 알 수 있는 어떠한 식별기호도 사용해서는 아니되며, 그 사용을 중단하고 종료일로부터 7일 이내에 철거해고 그 철거 내용을 가맹본부에 알려줘야 합니다. (필요 시 사진 등의 자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점포 운영과 관련된 모든 서류 (운영 매뉴얼, 교육 자료 등)를 즉시 반환해야 합니다. 그리고 계약기간 중에 취득한 [베스트키즈]의 비밀을 누설하여 가맹본부에 손해를 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위반 시 귀하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가맹점사업자가 지급한 계약이행보증금의 정산잔액과 정산서를 받을 때까지는 상호· 간판 등의 철거 내지 제거, 영업관리 자산의 반환의무 이행을 연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위 의무이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비용은 계약종료에 책임 있는 당사자가 부담합니다.]

[또한, 귀하는 계약 종료를 이유로 가맹본부가 이미 제공한 공급품, 비품, 소모품, 시설설비 등을 반환 청구할 수 없다. 다만, 공급된 상품의 완전물에 한하여 반환할 수 있으며, 가맹본부는 출고가격 으로 상환한다.]

Ⅴ. 영업활동에 대한 조건 및 제한*

귀하는 당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사업의 동일성 유지**를 위하여 **영업활동에 일부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기재된 내용을 신중히 살펴본 후 계약 체결 여부를 판단할 것을 권장합니다.

1. 물품 구입 및 임차

1) 귀하가 [베스트키즈]을 시작하거나 경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부동산·용역·설비 ·상품·원재료 또는 부재료 등의 구입 또는 임차와 관련하여, 당사 또는 당사가 지정하는 자와 거래하는 품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물품 구입 및 임차 현황



이 항목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은 가맹본부에 정보공 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나) 주요 품목^①별 직전 사업연도 공급가격의 상·하한



이 항목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은 가맹본부에 정보공 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2) 특수관계인의 경제적 이익

귀하가 [베스트키즈]을 시작하거나 경영하기 위하여 당사가 거래할 것을 강제^①하는 부동산·용역·설비·상품·원재료 또는 부재료 등의 구입 또는 임차와 관련하여, 당사의 특수관계인은 다음과 같은 경제적 이익을 수취하고 있지 않습니다.

명칭 ^②	관계	경제적 이익의 대상이 되는 상품 또는 용역의 명칭 ^③	경제적 이익의 내용 ^④	비고
-				
	7	- 네		

2. 거래 강제 또는 권장의 대가 내역

1) 당사는 [베스트키즈]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상품 또는 용역을 특정한 거래상대 방에게 거래하도록 강제 또는 권장하는 대가로 특정한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경제적 이익을 수취하고 있지 않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상품 · 용역 ^①	거래상대방	대가 지불	경제적 이익의 내용 ^②	급액 ³	비 <u>교</u> ④
		계			

2) 당사가 [베스트키즈]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상품 또는 용역을 특정한 거래상대 방에게 거래하도록 강제하는 대가로 당사의 특수관계인은 특정한 거래상대방으로 부터 다음과 같은 **경제적 이익을 수취하고 있지 않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관계	상품 • 용역	거래상대방	대가 지불	경제적 이익의 내용	금액	비고
계						

3. 상품・용역, 거래상대방, 가격 결정

1)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 · 용역의 판매 제한

당사의 상표권을 보호하고 상품 또는 용역의 동일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귀하는 지정 된 상품·용역만을 판매하여야 하며 그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상품 · 용역명 [⊕]	제한내용 및 조건 ²	위반시 책임 ^③	비고 ^④
시설이용료		1회 위반: 구두 경고	
어린이음료/아이스크림	왼쪽에 기재된 이외의	2회 위반: 2회 이상	
커피류	제품을 판매할 수 없음	서면 시정요구	
기타(스넥,빵,디저트 등)		3회 이상 위반: 계약 해지	

[귀하가 위 표에 기재되지 않은 상품·용역을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가맹본부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받을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당사는 경영환경의 변화 등으로 필요한 경우 위 표에 기재된 상품·용역 외에도 판매 제한을 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당사는 가맹점사업자의 동의를 미리 얻도록 하고 있으며, 동의가 없는 경우에는 본 정보공개서의 내용에 따라 사업을 진행합니다.]

2) 거래상대방(고객)에 따른 상품 · 용역의 판매 제한

당사의 상표권을 보호하고 상품 또는 용역의 동일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귀하는 지정된 고객에 대해 상품·용역을 판매하지 않아야 하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거래상대방 (고객) ^①	상품 • 용역명 ^②	제한내용 및 조건 ³	위반시 책임 ^④	비교 ^⑤
타 가맹점주 및 제3자	본사로부터 공급받은 물품	거래상대방별로 기재된 제품은 판매할 수 없음	1회 위반: 구두 경고 2회 위반: 2회 이상 서면 시정요구 3회 이상 위반: 계약 해지	

3) 가맹점사업자의 가격 결정의 제한

당사는 귀하가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의 가격을 정하여 이를 따르도록 권장하도록 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상품·용역명 ^①	권장가격(단위: 원) ²	가격 통보 방법	비고 ^③
시설 이용료	8,000 ~ 15,000	가맹점 통지 등	2023.12기준
어린이 음료/아이스크림	2,000 ~ 3,000	n	n,
커피류	2,000 ~ 5,000	"	n,
기타 (스넥,빵,디저트 등)	1,000 ~ 10,000	"	n,

[위 표에 작성된 가격은 귀하가 오픈하는 지역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당사와 사전 협의를 통하여 결정합니다.]

[귀하가 위 표에 기재된 권장가격과 다른 가격으로 상품을 제공 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서면으로 당사와 협의하여야 합니다.]

[판매 가격은 매년 물가 및 인건비 수준에 따라 변동 가능 합니다.]

4.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보호

1) 독점적 · 배타적 영업지역 설정

[당사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4에 의거 가맹계약 체결 시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을 설정하여 가맹계약서에 영업지역을 명시하고 있습니 다.]

[당사 및 당사의 계열회사는 가맹계약기간 중에는 정당한 사유없이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내에 동일한 업종의 직영점·가맹점을 추가 개설하지 않습니다. 동일한 업종의 범위 및 동일한 업종에 해당하는 당사 및 당사의 계열회사의 영업표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동일한 업종 범위 ^①	동일한 업종 영업표지 2		
중할만 집중 함기 -	가맹본부	계열회사	
키즈카페	베스트키즈	-	

2) 영업지역 설정기준

[당사는 영업지역을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설정	기준	설정방법
Type A : 로드샵	행정동 당 1개 점포	1. 별지에 영업지역 표시
Type B : 특수상권	해당 마트, 상가	(지도별첨을 원칙으로 함) 2. 특수상권의 경우 그 주소지 등으로 대체 가능

※ 단, Type A의 경우에도 백화점 마트, 몰, 시장, 지하상가, 공항, 호텔 등 이와 유사한

3) 가맹계약 갱신과정에서 영업지역을 재조정할 수 있는 사유 및 절차

[당사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4에 의거 가맹계약 갱신시 다음 과 같은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 한해서 가맹점사업자와 합의를 통하여 기존 영업 지역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영업지역 재조정 사유	재조정 절차	동의를 얻는 방법
① 재건축, 재개발, 신도시 건설 등 대규모개발로 인하여 상 권의 급격한 변동이 발생하는 경우		영업지역 변경(안)을 서면으로
② 해당 상권의 거주인구 또는 유동인구가 현저히 변동되는 경우	재조정 사유 발생 → 당사 담당팀 검토 → 영업지역 변경(안) 작성	통지하고 30일 이내에 동의 여부 회신
③ 소비자의 기호변화 등으로 인하여 해당 상품·용역에 대한 수요가 현저히 변동되는 경우	→ 가맹점사업자 동의 → 영	동의가 있는 경우 15일 이내에 영업지역 재조정 완료 (신규 점포 입점 가능)
④ 위의 사유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영업지역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불합리 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征川 宿工 百名 / 15)

단, 특수상권 등의 경우 해당 건물 등의 운영계획에 의거 매장의 위치 및 면적의 변경이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경우에는 귀하는 임대차 계약에 따라야 합니다. 이때 비용은 입점한 마트(해당 건물 등)가 부담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귀하가 부담합니다.

4) 영업지역 밖의 고객에게 상품이나 용역을 판매하는 데에 따르는 제한

[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와 약정한 영업지역을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영업지역을 벗어나 다른 가맹점사업자의 영역지역에 속한 고객에게 영업활동을 하는 경우 가맹본부는 다음의 조치를 취하여 가맹점사업자 상호간의 이해관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첫째, 가맹점사업자가 다른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의 고객과 거래하는 경우 가맹 본부가 두 가맹점사업자 간의 보상금 지불에 대한 중재안을 제시하는 행위]

[둘째, 영업지역을 침해받은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정 조정 요구가 있는 경우 매출액 현황 조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행위]

[셋째, 특정 가맹점사업자가 다른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을 반복적으로 침해하여 '베스트키즈'영업표지 이미지에 심각한 손해를 가한 경우 그 가맹점사업자에게 행위

- 의 시정을 요구하고 손해배상액을 청구하는 행위]
- 5)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이나 용역 등이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내의 대리점 등 다른 유통채널을 통해 공급되는지 여부

[당사는 [베스트키즈]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내에서 대리점, 다른 영업표지를 사용한 가맹점 등을 통해 가맹점사업자가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과 대체재 관계에 놓일 수 있는 동일·유사한 상품이나 용역을 공급하지 않습니다.]

6)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이나 용역 등이 온라인, 홈쇼핑, 전화권유판매 등다른 유통채널을 통해 공급되는지 여부

[당사는 온라인, 홈쇼핑, 전화권유판매 등을 통해 가맹점사업자가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과 대체재 관계에 놓일 수 있는 동일·유사한 상품이나 용역을 공급하지 않습니다.]

7) 그 밖에 영업지역에 관한 내용 ※해당사항 없음

5. 가맹본부의 온라인·오프라인 판매에 관한 사항

1)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연간 국내 매출액 중 온라인과 오프라인 매출액 비중 (단위: %)

	국내 온라인·오프라인 판매 매출액 비중 ^①				
연도	오프라인 판매 매출액 비중		온라인 판매 매출액 비중		
	가맹점	기타 오프라인	자사 온라인몰	기타 온라인 ^②	
2023년	100%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2)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국내 판매상품 중 온라인과 오프라인 전용 판매상품의 비중

(단위: %)

연도	오프라인 전용상품 비중 ^①	온라인 전용상품 비중 ^②	
2023년	100%	해당없음	

6. 계약기간, 계약의 갱신・연장・종료・해지・수정

1) 가맹계약 및 갱신 기간

[베스트키즈]가맹사업의 계약기간은 Type A (로드샵)의 경우에는 계약체결일로부터 [1]년이며, 가맹계약 갱신시 계약기간은 계약갱신일로부터 [1년]이며 Type B (특수상권)[베스트키즈]가맹사업의 계약기간은 특수상권의 임대차 계약 기간[1년]과 동일합니다.

2) 계약 연장이나 재계약, 또는 계약 종료에 필요한 절차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귀하에게는 가맹계약의 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최초 계약일로부터 10년간 주어집니다. 구체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순 서	기간(계약만료일: D-day)
① 가맹점사업자가 계약갱신을 요구하였습니까? 예→②, 아니오→⑦	D-180 ~ D-90
② 3)에서 정한 계약갱신 거절 사유에 해당합니까? 예→④, 아니오→③	D-180 ~ D-90
③ 가맹본부가 계약조건 변경을 서면으로 통지하였습니까? 예→⑤, 아니오→A	D-180 ~ D-90
④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거절 사유를 적은 서면으로 거절 통지를 하였습니까? 예→B, 아니오→A	①+15일 이내
⑤ 가맹점사업자가 계약조건 변경에 동의하였습니까? 예→C, 아니오→⑥	
⑥ 변경된 계약조건이 다른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계약조건 입니까? 예→B, 아니오→D	
⑦ 가맹본부가 계약갱신을 하지 않겠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였습니까? 예→B, 아니오→⑧	D-180 ~ D-90
⑧ 가맹점사업자가 계약갱신 또는 계약조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였습니까? 예→E, 아니오→A	D-60일 이전
A. 종전과 같은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약 체결	D-day
B.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날 계약 종료	D-day
C. 변경된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약 체결	D-day
D. 양자가 합의하여 계약조건을 바꾸어야 함(가맹본부가 계약 변경을 강행 할 경우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할 수 있음)	-
E. 양자가 합의하여 계약을 만료하거나 변경된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약 체결 (민사상 문제로 가맹사업법에서 특별하게 제한하는 규정 없음)	-

3) 계약 갱신 거절(종료) 사유

당사가 가맹계약의 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갱신요구 거절 사유	관련 계약조문
○ 가맹계약상의 가맹금 등의 지급의무를 지키지 아니한 경우	
○ 다른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계약조건이나 영업방침을 귀 하가 수락하지 아니한 경우	
○ 가맹점 운영에 필요한 점포·설비의 확보나 법령상 필요한 자격·면허·허가의 취득을 하지 못한 경우	7조 2항
○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의 품질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조공법 또는 서비스기법을 지키지 않은 경우	
○ [베스트키즈] 경영에 필수적인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방침을 지키지 않은 경우	

-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교육·훈련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다만, 교육·훈련 비용이 같은 업종의 다른 가맹본부가 통상적으로 요구하는 비용보다 뚜렷 하게 높은 경우는 제외합니다.)
- 4) 계약 해지 사유 및 그 절차

당사가 귀하와의 가맹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계약 해지 사유	관련 계약조문
1. "갑" 또는 "을"에게 파산· 회생 등의 신청이 있거나 강제 집행절차가	
개시된 경우	
2. "갑" 또는 "을"이 발행한 어음, 수표가 부도 처리되거나 강제 집행을	31조 3항
당하는 경우	017 09
3. 천재지변 등으로 "갑" 또는 "을"이 더 이상 가맹사업을 영위할 수 없게	
된 경우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당사는 가맹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귀하에게 서면으로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계약의 위반 사실 및 이를 시정하지 않을 경우 계약을 해지한다는 사실을 2회 이상 통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계약해지는 무효가 됩니다.

다만, 가맹사업법 시행령 제15조의 계약해지 사유에 해당되는 아래의 경우에는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이나 2회 이상의 서면통지 없이 계약서에 따른 절차를 거쳐 계약이 해지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즉시계약 해지 사유	관련	계약조문
가맹점사업자에게 파산 신청이 있거나 강제집행절차 또는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		
○ 가맹점사업자가 발행한 어음·수표가 부도 등으로 지불정지된 경우		
천재지변, 중대한 일신상의 사유 등으로 가맹점사업자가 더 이상 가맹사업을 경영할 수 없게 된 경우		
 ○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되는 법령을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행정처분을 받거나 법원 판결을 받음으로써 가맹본부의 명성이나 신용을 뚜렷이 훼손하여 가맹사업에 중대한 장애를 초래한 경우가. 위법사실을 시정하라는 내용의 행정처분나. 위법사실을 처분사유로 하는 과징금·과태료 등 부과처분다. 위법사실을 처분사유로 하는 영업정지 명령 ○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되는 법령을 위반하여 자격·면허·허가 취소 또는 영업정지 명령(15일 이내의 영업정지 명령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등 그 시정이 불가능한 성격의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다만, 법령에 근거하여 행정처분을 갈음하는 과징금 등의 부과 처분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 가맹점사업자가 법 제14조제1항 본문에 따른 가맹본부의 시정요구에 따라위반사항을 시정한 날부터 1년(계약갱신이나 재계약된 경우에는 종전 계약기간에 속한 기간을 합산한다)이내에 다시 같은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다 	31	조 4항

만, 가맹본부가 시정을 요구하는 서면에 다시 같은 사항을 1년 이내에 위반하는 경우에는 법 제14조제1항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가맹계약이 해지될 수 있다는 사실을 누락한 경우는 제외한다.

- ㅇ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된 행위로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
- 가맹점사업자가 뚜렷이 공중의 건강이나 안전에 급박한 위해를 일으킬 염려가 있는 방법이나 형태로 가맹점을 운영하고 있으나, 행정청의 시정조치를 기다리기 어려운 경우
- 가맹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연속하여 7일 이상 영업을 중단한 경우

5) 계약 수정의 사유, 사전 통보 여부 및 동의 절차

당사는 계약기간 중에 계약서의 내용을 변경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귀하의 동의를 얻어] 계약 조건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계약 수정 사유	관련 계약조문
○ 1. 가맹사업법의 개정 및 기타 관련 법률의 제정 또는 개정의 경우	레 4 0 구 9 중].
○ 2. 가맹사업의 통일화를 위한 영업방침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제40조3항

재조정 절차	동의 절차	
계약 수정 사유 발생 → 당사 담당팀 검토 →	수정 계약서(안)를 서면으로 통지하고 30일	
수정계약서(안) 작성 → 가맹점사업자에게 서면	이내에 동의 여부 회신	
통지 → 가맹점사업자 동의 → 수정 완료	동의가 있는 경우 수정계약서에 정한 날부터 효력 발생	

7. 가맹점운영권의 환매・양도・상속 및 대리행사

1) 가맹점운영권의 환매

당사는 [귀하가 가맹점을 운영하다가 개인사정 등으로 조기에 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 가맹점사업자를 찾을 때까지 일시적으로] 가맹점운영권을 다시 사들여 직영점체제로 운영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2) 가맹점운영권의 양도^①

귀하가 가맹점운영권을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기 위해서는 [3개월 전에 당사에게 서면으로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고, 당사의 승인이 있어야만 합니다.] 별도의 추가 부담금은 없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양도 가능 조건	양도 절차	비고
	가맹점사업자가 서면으로 3개월전 양도 신청 → 당 당한 사 담당팀 검토(양수인 면담 포함, 14일 가량 소요) 것 → 승인 여부 통지→ 양도인, 양수인, 가맹본부의 양수 도 계약 체결(7일 소요) → 가맹점운영권 이전 완료	문의: 가맹본부

[당사가 양도를 승인하면 양수인은 양도인의 모든 권리의무를 승계하게 되며 양수인은 교육비 및 계약이행 보증금을 납입하여야 합니다. 다만, 양수인이 원할 경우 당사는 양수인과 신규 가맹계약을 맺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신규가맹계약일지라도 가맹점 모집비용, 개점행사비 등이 일반적인 신규가맹계약보다 적게 소요될 경우에는 비용 소요액에 상응하는 가맹금을 당사와 협의하여 지급하실 수 있습니다.]

3) 가맹점운영권의 상속, 대리행사, 위탁 등

가맹점운영권은 원칙적으로 당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한 귀하에게 주어집니다. 따라서 개인사정 등으로 가맹점운영권을 다른 사람에게 대리행사하게 할 경우에는 당사에 사전에 서면으로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가맹점사업자의 상속인은 가맹점 영업을 상속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상속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사실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다만, 상속인이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에 해당하거나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맹계약은 종료합니다.

구분	가능 여부(조건)	이전 범위	절차	기타의무사항
상속	본부 승인 시 가능	모든 권리의무	상속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본사에 상속사실 통지	교육수료 및
대리행사	불가	_		교육비 지급
업무위탁	불가	_		

[상속인은 당사가 승인하면 모든 권리의무를 승계하게 되며 교육비를 납입하고 해당 교육 및 훈련을 받아야 합니다.]

8. 경업금지, 영업시간 제한, 가맹본부의 영업장 관리·감독

1) 경업금지의 범위

당사는 계약기간 동안 [대한민국전역에서] 귀하가 [베스트키즈]과 동일한 업종의 영업을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만약 귀하가 그러한 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가맹본부에 서면으로 그 사실을 통지하여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경업금지 되는 업종	경업허가 절차	비고
○ 키즈카페	가맹점사업자가 서면으로 경업허가 신청 → 당사 담당팀 검토(시장조사 포함, 30일 가량 소요) → 허가 여부 통지 → 완료	

2) 영업시간 및 영업일수 제한

당사는 [베스트키즈]의 영업시간 및 영업일수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영업시간	영업일수	비고
로드샵 : 10:00~21:00 특수상권 : 별도 협의	로드샵 : 주 6 일 특수상권 : 별도협의	문의: 가맹본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제10호에 따라 귀하가 정당한 사유없이 연속하여 7일 이상 영업을 중단한 경우 가맹계약 해지가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3) 권장 종업원 수 및 영업장 근무 여부

당사는 귀하가 운영하는 가맹점포(영업장)의 종업원 및 근무 형태를 제한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권장 ^① 종업원수	직접 근무 여부 ²	대체 가능 인력 [®]	비고 ^④
제한없음	직접 근무	점주의 배우자, 직계가족	점주의 부재시 가맹본부에 사전 통보

4) 가맹본부의 영업장 관리·감독

당사는 귀하가 운영하는 가맹점포(영업장)를 정기적으로 관리·감독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관리·감독 항목	감독 절차	빈도 및 시기	담당팀	비고
가맹점 관리	담당자 가맹점 방문 → 청결도 및 매장현황 확인 → 관리표 작성 → 가맹점사업자 확인 및 서명 → 완료	분기 1회이상	본사 담당팀	

추가적으로,

어린이 놀이시설물은 안전인증 및 설치 검사를 받아야 하며, 관리 주제(여기서는 가맹점 사업자)는 아래 분류 중 해당되는 유지 관리 의무(중복가용)를 아래와 같이 이행해야 합니다.

분류	검사 및 체크사항	공통	비고
어린이 놀이시설	최초 설치검사 이후 2년에 1회 정기검사	- 놀이시설 보험 가입 (배상책임 최대 8천만원	
기타 유원시설	최초 설치검사 이후 2년에 1회 정기검사	보상가입)	아이를 10이 키즈
안전 관리자	안전 관리자 교육 2년에 1회 수료	- 중대사고 발생시 보고	23년 12월 기준
휴게 음식점	위생담당자 식품 위생교육 1년에 1회 수료	- 필요시 안전진단 신청	

[※] 매장 운영 환경에 따라 상이할 수 있습니다.

9. 광고 및 판촉 활동

1)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의 비용 분담 기준

당사는 [베스트키즈] 브랜드 이미지 제고 및 매출액 증대를 위한 전국 단위의] 광고 및 판촉 활동을 위해 필요한 비용을 [가맹점사업자와 나누어 부담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광고 성격	본사부담	부담비율 가맹점부담	분담 절차	비고	
광고 전체 행사	상품광고 +가맹점 모집광고	광고비의 50%	광고비 50% 중 가맹점 별 매출액 비율 따라 산정	광고 계획 공고 → 가맹점의 광고참여 여부 결정 →	대중매체 광고 명절, Day 이벤트 행사	
	가맹점 모집광고 전액 부딤		없음	가맹점부담액 제시(명세서)	(전국 행사)	
판촉행사	일반적인 전체 행사	통일적인 홍보 물 등의 디자인, 시안 등의 제작 비용 등은 당사	가맹점사업자가 직접 판매하는 상품의 할인 비용이나 직접 제공하 는 경품·기념품·팜플렛 ·전단 등의 홍보물 등의 비용은 가맹점사업자 가 부담	계획 공고 → 가맹점부담액 제시 → 가맹점 참여 여부 결정 → 최종 분담금 확정(명세서)	행사에 따라 상이	

[전국단위의 광고일 경우 가맹점부담액은 광고비 중 일부를 광고시행 직전 분기의 각 가맹점사업자의 총매출액 비율에 따라 분담합니다. 지역 광고일 경우에는 해당 지역 내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부담액 부분을 분담합니다.]

※ 전국광고의 경우 다른 성격의 광고는 시행하지 않습니다.

2) 가맹점사업자의 독자적 광고 • 판촉 활동

[개별 가맹점사업자가 스스로 또는 다른 가맹점사업자와 함께 독자적으로 광고·판촉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사전에 광고, 판촉의 내용 및 일시 등과 관련하여 승인을 얻어 활동 할 수 있습니다.]

10.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사항

당사의 영업비밀이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가맹본부의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합니다.

귀하는 계약체결 및 가맹점 운영상 알게 된 가맹본부의 영업비밀을 계약기간은 물론 계약종료 후에도 제3자에게 누설해서는 안 됩니다. 가맹본부의 허락 없이 교육과 세미나자료 기타 가맹점운영과 관련하여 영업비밀이 담긴 관계서류의 내용을 인쇄 또는 복사할 수 없습니다.

당사의 영업비밀을 무단으로 유출할 경우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해 처벌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당사의 영업비밀은 한국특허정보원의 영업비밀 원본 증명 서비스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11. 가맹계약 위반시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

가맹계약의 당사자는 상대방의 계약위반이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손해배 상액의 예정으로서 위약금을 청구하거나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자세 한 사항은 아래와 같다.

- ① 귀하가 계약기간 내 또는 계약종료 이후 계약서 제 17조(비밀유지의무)를 위반할 경우 또는 계약기간 내 제 18조(경업금지 의무) 제 1항을 위반하는 경우에 귀하는 당사에게 위약벌로 금 오천만원(₩50,000,000)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 ② 귀하가 계약서 제22조 제1항 제1호 및 제 2호의 공급품에 대하여 제 23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의 경우를 제외하고 자점매입을 한 경우 귀하는 당사에게 위약벌로 금 오백만원(\{\pi_5,000,000\))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 ③ 귀하가 계약서 제 31조 제 2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절차를 지키지 않고 가맹점의 운영을 일방적으로 해지.중단.폐업처리하거나 당사의 영업표지를 사용하지 않는 점포로 운영 또는 양도한 경우 귀하는 당사에게 위약벌로 금 오백만원(₩5,000,000)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 ④ 귀하가 계약의 종료 또는 해지 후 당사가 계약기간 내에 사용을 허락한 영업표지 등을 상호, 간판, 기타 표시물 등을 무단으로 사용할 경우 귀하는 계약종료 익일부터 위약벌로 1일 금 삼십만(₩300,000)원 씩 당사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 ⑤ 위 ①내지 ④에 의한 위약벌 이외에 양 당사자에게 추가적으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를 입은 자는 그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VI. 가맹사업의 영업 개시에 관한 상세한 절차와 소요기간

1. 상담ㆍ협의 과정에서부터 가맹점 영업 시작까지 필요한 절차 요약

귀하가 당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할 경우 상담일로부터 실제 가맹점이 개설될 때까지 걸리는 시간과 필요한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구분	내용	소요기간 ^①	소요비용 ^②
합계		48일 내외	
가맹희망자 문의	- 전화문의 접수 - 희망지역 확인, 담당자 배정	D-48(1일)	
사업 설명・상담	- 정보공개서 제공 - 인근 10개 가맹점 현황문서 제공 - 가맹희망자 상담	D-47~46(2일)	
점포개발 및 상권분석 실시	- 입지선정 - 입지 주위 점포 정보 제공	필요시 실시	IV.가맹점사업자
최종 협의	- 개설 승인 - 추가 협의사항 체크	D-45~44(2일)	의 부담 1.영업개시
계약서 제공	- 계약 체결 14일전 제공(법령)	D-43~28(15일)	이전의 부담 1)~4)를
가맹계약 체결	- 계약 체결	D-27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맹금 예치	- 은행에 가맹금 예치	D-26(1일)	(14~15쪽)
점포실측/설계	- 투자비 산출	D-25~24(2일)	
실내외 공사착수	- 도면협의 및 공사일정 확인	D-23(1일)	
인테리어 공사 및 점주교육 실시	- 공사 실시(인허가) - 점포운영교육 실시	D-22~2(21일)	
점포 개설	- 가맹점 개설 및 영업시작	D-day	

위 표에 따른 소요기간은 평균적인 가맹점을 기준으로 작성된 것으로, 협의 과정에서 시장상황 등에 따라 그 기간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귀하는 본사와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변호사나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문이 필요하신 경우는 본사에 소속되어 있거나 업무 연관성이 있는 변호사나 가맹거래사를 제외하고 귀하께서 선택하신 가맹거래사나 변호사에게 정보공개서 및 가맹계약서 등에 대하여 자문을 받으시기 바라며, 특히 정보공개서에 대하여 자문을 받으신 경우에는 계약체결일이 정보공개서 제공 14일 후에서 7일후로 단축됩니다.

2. 가맹본부와의 분쟁 해결 절차

[가맹계약 당사자는 계약의 해석 또는 계약에 의해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 다툼이 있을 경우 법적 절차에 이르기 전까지 우선적으로 대화와 협상을 통해 분쟁을 해결하도록 합니다.]

[대화와 협상으로 분쟁이 해결되지 아니할 경우,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

률 제22조에 따라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연락처:** 1588-1490, 홈페이지: http://www.kofair.or.kr) 또는 시·도의 분쟁조정협의회에 조정을 신청하거나 다른 법령에 의해 설치된 중재기관에 중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중재를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법적 분쟁에 관한 소송은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단,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가 관할법원에 대해 약정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Ⅶ. 가맹본부의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

1. 점포환경개선 시 비용지원 내역

[당사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 및 시행령 제13조의2 규정에 의거 다음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 한하여 점포환경개선을 실시하고 있으며, 가맹점사업자의 점포환경개선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분담하고 있습니다. 분담비율 및 구체적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다만,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 규정에 의거 가맹점사업자의 자발적 의사에 의하여 점포환경개선을 실시하는 경우 및 가맹점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위생·안전 및 이와 유사한 문제가 발생하여 불가피하게 점포환경개선을 하는 경우에는 비용분담을 하지 않습니다.]

점포환경개선	가맹본부 부담	가맹본부 부담	지급절차	비용부담 제외사유
사유	비용항목	비용비율	11 6 1	10111
○점포의 시설, 장비,	ㅇ간판교체 비용	ㅇ점포의 확장 또는	ㅇ가맹점사업자의	○점포환경개선일로
인테리어 등의	이인테라어 공사비용	이전을 수반하지	비용 청구(공사계	부터 3년 이내에 가
노후화가 객관적	(장바집기의 교체	않는 점포환경개선	약서 등 공사비용	맹본부의 책임없는
으로 인정되는 경우	비용을 제외한	: 20%	을 증빙할 수 있	사유로 계약이 종료(계
0위생이나 안전의	실내건축공사에	○점포의 확장 또는	는섀큐 참위 → 90	약의 해자·영업양도포
결함으로 인하여	소요되는 일체의	이전을 수반하는	일 이내에 가맹본	해되는 경우 가맹
가방 업의 통일성	바용. 단, 가맹	점포환경개선	부 부담액을 기맹점	본부 부담액 중
을 유자하기 어렵	사업의 통일성과	: 40%	시업자에게 지급	잔여기간에 비례하
거나 정상적인	무관하게 가맹점		(단, 가맹본부와	는 부담액은 지급하지
영업에 현저한	사업자가 추가		가맹점사업자간	아니하거나 이미 지
지장을 주는	공시를 실시함에		별도의 합의가 있는	급한 경우에는 환
경우	따라 소요되는 비		경우 1년의 범위내에	수 가능
	용은 제외)		서 분할지급기능)	
			〈분할지급 시 절차〉	
			ㅇ가맹점사업자의	
			비용 청구(공사계	
			약서 등 공사비용	
			을 증빙할 수 있	
			는 샤류 참위 → 3	

차에 걸쳐가맹본부	
부담액을 분할 지	
그	
(1차 : 청구일로부터	
90일 이내,	
총 부담액의 30%,	
2차 : 1차 지급일로	
부터 60일 이내, 총	
부담액의 30%, 3차	
: 2차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 총 부담	
액의 40%)	

2. 판매촉진행사 시 인력지원 등 내역

* 해당사항 없음

3. 경영활동 자문

* 해당사항 없음

4. 신용 제공 등 내역

* 해당사항 없음

5. 안정적인 점포 운영을 위한 경영상 지원 내역

당사는 가맹점사업자의 안정적인 점포 운영을 돕기 위해 경영상 지원활동을 하고있지 않습니다.

Ⅷ. 교육·훈련에 대한 설명

1. 교육・훈련의 주요내용

[당사는 베스트키즈 운영에 필요한 제반 지식 및 노하우를 귀하에게 전수하기 위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주요내용	교육방식	기한	비고
개점 전 교육	회사 소개, 서비스, 점포운영 등	실습교육	가맹계약 체결 후 1개월 이내	필수 교육
재교육	재교육필요항목	집단 강의	협의	필수 교육
수시 교육	점포운영 종업원 관리 실무 등	실습교육	필요시 당사 사전 고지	필수 교육
특별 교육	요청사항	실습 및 이론	협의	선택

2. 교육・훈련의 최소시간 및 비용

귀하가 [베스트키즈] 가맹사업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교육·훈련의 최소시간 및 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최소시간	비용(단위: 천원, 부가세포함)	비고
개점 전 교육	14 일	11,000	최초 계약시 이수
재교육	7 일	추후 공지	평가기준미달시
수시 교육	본사 기준	본사 기준	관리실무 등
특별 교육	협의	본사책정비용	가맹점주 비용부담

3. 교육・훈련의 주체

교육·훈련은 가맹계약을 맺는 당사자가 직접 받아야 합니다. 다만, 귀하가 직접 받기어려운 경우에는 본사의 사전 승인을 받아 가맹점을 함께 운영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대신하게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가맹계약 당사자가 원하여 당사자 외 직원도 같이 교육을 받게 되면 인원 추가에 따라 비용도 추가됩니다.

4. 교육・훈련 불참시에 받을 수 있는 불이익

계약 체결 후 신규 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가맹계약서 9조에 따라 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가맹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또한 당사가 필요로 할 경우 가맹점사업자는 사업전개 후라도 당사가 정한 소정의 교육을 수강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본사가 정한 기준에 따라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기한 내 수시 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가맹계약서 16조에 따라 14일 내로 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본사가 정한 기준에 따라 벌점을 부여받는 등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Ⅸ. 가맹본부의 직영점^① 운영 현황

- 1.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직영점의 명칭 및 소재지
 - * 당사는 베스트키즈로 직영점을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 2.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전체 직영점의 평균 운영기간 2

(단위: 년, 개월)

2023년 직영점의 평균 운영 기간	비고
해당없음	

3.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전체 직영점의 연간 평균 매출액산정기준

(단위 : 천원, 부가세 미포함)

2023년 직영점의 연간 평균 매출액	비고 [®]
해당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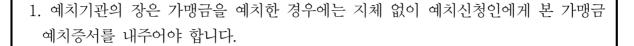


이 항목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은 가맹본부에 정보공 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서식] (앞 쪽)

		가맹금예치신청서 	처리기간
		가영급에시신경시	즉시
	상호(가맹점) 명		
신청인	성명(대표자)		
	주소(사무소)	(전화:)
111	상호명 (영업표지)	(주)서울랜드 (베스트키즈)	
가맹 본부	성명(대표자)	김 대 중, 신 상 철	
L	주소(사무소)	경기 과천시 광명로 181 (전화: 02-509-6225)	
예치가	맹금	₩ (금	원 정)
신청인	의 계좌		
가맹본-	부의 계좌		
•	_ , , , , , ,	'정화에 관한 법률」 제6조의5제1항, 김 마라 위와 같이 가맹금을 예치하여 줄 ?	_ ,, , , , ,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예?	치기관의 장		
	지점장	귀하	

210mm×297mm(일반용지 60g/m²(재활용품))

예치기관이 주의하여야 할 사항



- 2. 예치기관의 장은 가맹금의 예치일 부터 7일 이내에 이 증서를 첨부하여 가맹금을 예치한 사실을 가맹본부에 통지하여야 합니다.
- 3. 예치기관의 장은 가맹금 예치 및 그 관리로 인하여 발생하는 비용을 관리수수료 로서 가맹금의 수령인이 수령할 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별첨 3. [설비 및 기물 리스트]

* 주방설비



이 항목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은 가맹본부에 정보공 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 내부설비(놀이시설) / 매장별 상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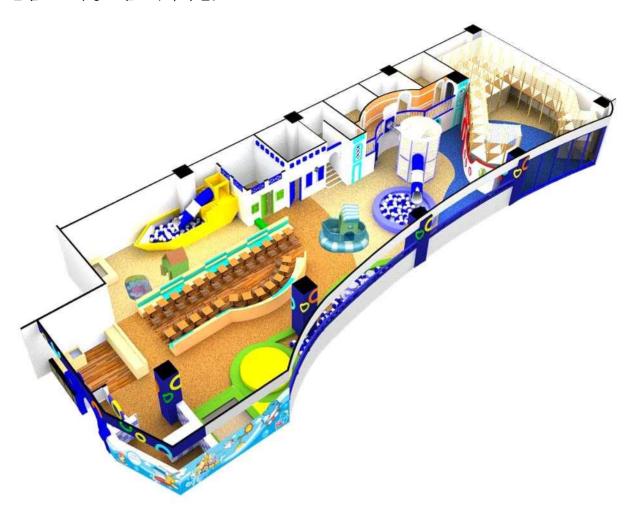
이 항목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은 가맹본부에 정보공 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별첨 4. 필수 공급품목



이 항목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은 가맹본부에 정보공 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별첨 5. 매장조감도(예시안)



별첨 6. 직영점, 가맹점 리스트

- 1) 직영점
 - * 당사는 베스트키즈로 직영점을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 2) 가맹점



이 항목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은 가맹본부에 정보공 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별첨 7.

정보공개서 및 인근 가맹점현황 제공확인서(가맹희망자용)

□ 정보공개서 제공

가맹본부	(주)서울랜드		영업표지		베스트키즈			
	-11 -1 -1 -1	"정보	공개서·	를 제	공받았습니다	} ." 라고 아	래에 자필로 적	착성
가맹희망자	제공사실	☞ "						"
자필작성 제공일		년	월	일	시	제공 장소		
부분								
	성명			서명	또는 (인)	전화번호		

□ 인근 가맹점 현황 제공

가맹희망자의 장래 점포 예정지에서 가장 가까운 가맹점 10개의 일반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 정보 공개서 제공시점에 해당 광역지방자치단체에서 영업중인 가맹점이 10개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광역지방자치단체 내의 가맹점 전체 현황을 제공하며, 장래점포예정지가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확정되는 즉시 제공하겠습니다.

연번	상호	소재지	전화번호
1			
2			
3			
4			
5			
6			
7			
8			
9			
10			
가맹희망자 점포예정지			

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에게 정보공개서 및 인근 가맹점현황(별첨)을 제공하였고, 가맹희망자는 정보공 개서 및 인근 가맹점현황을 제공받았음을 확인하며 이에 확인서2부를 작성하여 양당사자가 1부씩 보관합니다.

기메보보	(61)	가맹희망자: 성명	시1	ᇜ	또	(O)	I١
가맹본부 :	(让)	7134371.33	3^\'\'	~	工工	(인	ر!

별첨 7.

정보공개서 및 인근 가맹점현황 제공확인서(가맹본부용)

□ 정보공개서 제공

가맹본부	(주)서울랜드			영업표지		베스트키즈		
가맹희망자 자필작성 부분	제공사실	"정보공개서를 제공받았습니다 ."라고 아래에 자필로 작성						
		13F "						"
	제공일시	년	월	일	시	제공 장소		
	주소							
	성명			서명	또는 (인)	전화번호		

□ 인근 가맹점 현황 제공

가맹희망자의 장래 점포 예정지에서 가장 가까운 가맹점 10개의 일반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 정보 공개서 제공시점에 해당 광역지방자치단체에서 영업중인 가맹점이 10개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광역지방자치단체 내의 가맹점 전체 현황을 제공하며, 장래점포예정지가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확정되는 즉시 제공하겠습니다.

연번	상호	소재지	전화번호
1			
2			
3			
4			
5			
6			
7			
8			
9			
10			
가맹희망자 점포예정지			

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에게 정보공개서 및 인근 가맹점현황(별첨)을 제공하였고, 가맹희망자는 정보공 개서 및 인근 가맹점현황을 제공받았음을 확인하며 이에 확인서2부를 작성하여 양당사자가 1부씩 보관합니다.

가맹본부 :	(01)	가맹희망자:	: 성명	서명	또는	(인))
		. 1 0 - 1 0 - 1	0 0	, ,		\ <u>_</u>	